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2
----------	-----

제출년월일 : 2000. 12.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유사기금운용 통합 관리계획에 따라 별도 구분 관리하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조례명을 기금통합 제명으로 변경
-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 기금관리에 있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금 별도 구분관리 규정 삭제
-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 규정 정비

개정근거 : 유사기금운용 통·폐합 조례개정 추진계획 후속조치
(충북예산 13310-377(2000.5.24)호 관련)

기타참고자료 : 따로붙임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지원사업기금”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설치운영”을 “설치및운용”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운영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관리”를 “기금관리·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내지 제5항을 제1항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3항(종전의 제4항)중 “운영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등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등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취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u>청소년지원사업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u>설치운영</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 및 운영 <u>관리</u>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충청북도 정조정위원회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제4조(기금관리) ①기금은 <u>청소년 자립 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으로 별도 구분 관리한다.</u></p> <p>②기금은 도 금고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u>예탁관리한다.</u></p> <p>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p> <p>④도지사는 기금의 <u>운영관리</u>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u>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u></p> <p>제1조(목적)-----</p> <p>-----</p> <p>-----</p> <p>-----</p> <p>-----<u>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u>-----</p> <p>-----<u>설치및운용</u>-----</p> <p>-----</p> <p>제3조(기금운용심의)-----<u>관리·</u> <u>운용</u>-----</p> <p>-----</p> <p>-----</p> <p>제4조(기금관리·운용) <삭제></p> <p>①-----</p> <p>-----</p> <p>②-----</p> <p>-----</p> <p>-----</p> <p>③-----<u>관리·운용</u>-----</p> <p>-----</p> <p>-----</p>

현행	개정안
<p>⑤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지급대상등) ① <생략></p> <p>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u>교육법에</u>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p> <p>2~3 <생략></p> <p>②<u>사회교육법에</u> 의거 등록된 <u>사회교육시설</u>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등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시설></p>	<p>④----- ----- ----- -----</p> <p>제5조(기금지급대상등)① <현행과 같음></p> <p>1.----- -----<u>초·중등교육법</u>----- -----</p> <p>2~3 <현행과 같음></p> <p>②<u>평생교육법</u>-----<u>평생교육시설</u>----- ----- -----<u>다만,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등에 한한다.</u>-----</p>

관 계 법 령 발 취

□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2(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장학사업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